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0. 02. 03. (월)	담당자	십대여성인권센터 권주리 사무국장 02-2633-1312
서울시 영등포구		http://www.teen-up.com/	
전 화		전 송	02-2690-1255
		teen-up.com@hanmail.net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에 대한 2020년 1월 31일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과 양형기준,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현실을 규탄하며, 사이버상 성착취
영상물 등의 유통과 판매, 구매와 소지를 엄단하고
근절할 수 있는 법률 제정과 전담 체계를 즉각 설치하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9. 04.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통한 판매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01.31.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에서 실형(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범죄수익 948만여원 추징)이 선고되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경과

날짜	경과	세부내용
2019년 4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글 발견	· 판매자가 게시한 ‘양O’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판매글 발견함. ·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와 접촉함.
2019년 4월	판매자와 접촉하여 영상물 거래, 고발장 제출	·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SNS로 넘어와 영상물 거래에 대한 대화를 나눔. · 판매자의 실명 계좌에 55,000원을 입금, 판매자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영상물을 전달 받음. · 제목에 따르면 영상 363개 모두가 중딩, 고딩 이용 성착취 영상물이라 볼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야만 현행 법률에 적용될 수 있어 그 중 누가 보아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 60여 개를 추려 검찰청에 고발(음란물제작 배포등)을 진

		행함.
2019년 5월	고발인 경찰 조사를 받음	·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지역 경찰서로 하달되어 지역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받음. · 관할 경찰서에 영상의 제작 과정부터 수사할 것을 요청함.
2019년 11월	판매자 구속 기소	· 판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
2020년 1월 24일	의견서 제출	· 판매자의 처벌에 대한 본 센터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함.
2020년 1월 31일	선고 재판	· 판매자에 대한 선고 재판 · 1심 결과,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범죄수익 948만여원 추징

2. 논평

1.

고발인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판매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일단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통한 운영자를 1심 집행유예, 2심에서야 겨우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여 국제 공조 수사에 참여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판결을 내려 사회적 공분을 산 이후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려 노력하였고, 이전의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판매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청법 제11조 ②)고 한 조항에 비추어 5년이나 7년, 9년 등의 실형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은 여전히 최소한의 처벌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했을 때는 종신형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반해 한국의 처벌수준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매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교육과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지·판매한 음란물 중에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는 것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의 사유는 재판부가 문제의 소지를 새롭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유리한 정상이 되었다는 점인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사춘기 이전의 영·유아 아동을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가중 사유가 될 이유이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으로 영·유아 아동이 아니고 고연령의 아동·청소년들이나 특히 성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 판매, 구입,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는 별로 대단치 않은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코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불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성매매 범죄의 가담자로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가 성인인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되는 점에서 법원이 얼마나 성별로 편파적인지 얼마나 비균형적인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연령(만 13세)으로 자발과 강제를 구별하여 보호하고 처벌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의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며, 우리 사회 사법부의 젠더 감수성과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3.

본 센터는 이번 판결이 이전의 유사한 사건보다 비교적 중형인 1년 실형이 내려진 것을 일단 환영하였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유통, 판매한 성범죄자가 겨우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 받고, 구입, 소지한 성범죄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법 제 11조 ⑤)고 하였으나 실제 소지자들은 대체로 수사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수사되었다 하여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본 센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음란물 소지’ 혐의로 사건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총 4건 송달되었으며, 육군 보통검찰부에서 2건은 접수된 사항을 알리는 통지였고, 나머지 2건은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을 알리는 통지였다. 추정금 940만원을 55,000원에 구매한 점을 단순 계산하여도 총 170여명이 구매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통보된 수사 대상자는 현재까지 4명에 불과하였고, 그 또한 현재까지 정식기소된 소지자는 1명도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판매한 성범죄자가 겨우 실형 1년을 받은 것이 이례적으로 중형이 나왔다면 환영을 하는 상황인데,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의 엄단과 근절은 바랄 수도 없을 것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소지 행위만으로도 최하 징역 5년에서 최대 20년을, 영국은 구금 26주에서 3년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은 성착취 영상물 등의 유통, 판매, 소지 등의 근절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고싶어하고, 소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제작과 유통, 판매자들을 낳고 있다는 것을 해외 국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2년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 구입, 판매, 소지를 엄단하고 근절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전담 체계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 사이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미루지 말라.

<끝>